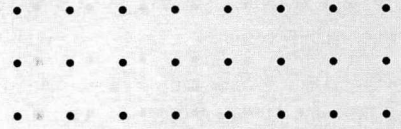




환경부 공고 제2007-3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 완화
(안 별표 1의2 제2호)

-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 (1) 고형연료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의 안정화 기대

환경부 공고 제2007-30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2007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각종 수지류와 잉크 등을 원료로 열과 압력 등을 가하여 코팅(인쇄)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제하여 빈번한 환경오염피해사태와 대기환경의 개선 유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현행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부합되도록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분류하고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초과인정 특례규정에서 제외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안 별표 3 제2호 다목(2))

(1) 인쇄·건조시설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한하여 적용

나.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수·폐기물 투입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측정항목 확대(안 별표 8 제3호 다목(3))

(1) 대부분의 소각시설에서 승온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환원촉매장치)을 부착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대상인 일산화탄소 측정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먼지, 질소산화물(NOx)등)도 초과되는 사례 발생

(2) 폐수·폐기물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측정(전송)항목을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3) 소각시설의 특례인정 측정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담감 감소

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의 마련(안 별표 8 제3호 다목(4)의 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05.4.15)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19개 시설에서 39개 배출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배출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제공 필요

(2) 공통시설 중 폐수소각시설,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식각시설 등 신규부착 대상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마련

(3)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이 마련되지 않은 배출시설에 초과인정시간 특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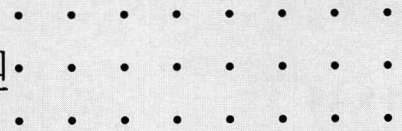


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의 재가동중지 인정시간 기준완화(안 별표 8 제3호 다목(4)의 표)

- (1)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의 경우 8시간 이상 가동중지 후 재가동해야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 가동 및 중지가 많은 발전시설은 동 특례규정을 적용 받기 어려움
- (2) 공통시설 중 기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복합화력발전시설 및 내연기관발전시설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가동중지 인정시간을 조정
- (3) 배출시설의 특성에 감안하여 가동중지 인정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86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7년 8월 3일

1. 개정이유

2006년 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3대강 수계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하여 한강수계의 경우와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4조의2 신설)

-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5조의2 신설)

- (1)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3)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오염물질 부하를 낮추고, 폐수 및 슬러지 발생량의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됨.

다. 관거(管渠)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법 제15조의3 신설)

- (1)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가 적정하게 설치, 관리되니 아니할 경우 지하수 또는 하천수 등이 관거내로 다량 유입되어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2)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3) 하수관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통하여 지하수 등이 관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처리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신설(법 제15조의4 신설)

- (1)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 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 (3) 폐기물 매립시설이 한강 인접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19조)

- (1) 이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 사용자로 확대화되,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률마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